

## 유.무선중계기국 주파수 배정표

		433.500 - 433.980(MHz)			1.차 배정	2.차 배정
순		1차	2차	지역명	주 배분 지역	예비배분지역
1	1	433.500		포항	5 지역 경남(부산 울산 포항), 경북(대구 구미 울릉도)	2차 1 지역 배분
2	2	433.520		안동지부		
3	3	433.540		청송지부		
4	4	433.560				
5	5	433.580				
6	1	433.600			4 지역 전남(광주), 전북, 제주도	2차 2 지역 배분
7	2	433.620				
8	3	433.640				
9	4	433.660				
10	5	433.680				
11	1	433.700		충북본부	3 지역 충남(대전), 충북	2차 자체 배정
12	2	433.720				
13	3	433.740				
14	4	433.760				
15	5	433.780				
16	1	433.800		강원본부	2 지역 강원, 경기(인천 부천)	2차 4 지역 배분
17	2	433.820		횡성지부		
18	3	433.840		원주지부		
19	4	433.860		홍천지부		
20	5	433.880				
21	1	433.900			1 지역 서울특별시 전역	2차 5 지역 배분
22	2	433.920				
23	3	433.940				
24	4	433.960				
25	5	433.980				

1. 모든 중계기는 전파법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연맹에서만 개설할 수 있다.
2. 컴퓨터와 무선국을 결합 연결(일명:에코링크)하여 무선국을 운용하는 행위는 무단 중계기국 개설 운용에 해당됨으로 전파법 위반이다.
3. 전파법에 의하여 연맹에서만 긴급재난통신을 위하여 유.무선중계기국을 개설할 수 있다.
4. 유.무선중계기국의 주파수는 상기 주파수 배정표에 의하여 제1차 배정주파수로 배정하고, 제2차 배정 주파수는 그 다음에 사용하며, 예비주파수는 각 지역별로 예비로 둔다.
5. 유.무선중계기국의 허가는 전파법 및 무선국관리규정 그리고 유.무선중계기국 관리규정에 의하여 허가 운용 및 관리한다. (2012.11월)

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중계기위원회